

번역문 인증시 구비서류

번역문 인증이란 ?

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,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번역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는 절차

▶ 당사자가 자신의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출석할 때

1. 번역문과 해당원문
2. 신분증
3. 도장
4.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
▶ 번역을 번역인에게 의뢰하고 번역인이 출석할 때

1. 번역문과 해당 원문
2. 신분증
3. 도장
4.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
▶ 번역을 번역인에게 의뢰하고 번역의뢰인이 출석할 때

1. 번역문과 해당 원문
2. 신분증
3. 도장
4. 번역인이 “번역인 협약서” 작성
(번역인 신분증 사본, 번역인 자격증명서류 첨부)

◎ 유의사항 :

- * 번역문 인증의 경우에는 법령상 촉탁인이 '서명날인'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* 공증사무소에서는 번역절차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번역사무소에 번역을 의뢰하거나 번역료를 지불(송금)하는 등의 업무는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.